

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

(전경원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22. 09. 02.

발의의원 : 전경원, 권기훈,
김정옥, 류종우,
박소영, 윤권근,
이재숙, 이재화,
임인환, 하중환
의원(10명)

1. 제안 이유

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이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·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및 추진사업을 규정함(안 제5조, 제6조)
- 다. 대안교육기관,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실시 기관·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(안 제7조)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

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업중단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- 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
- 나. 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
- 다. 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것

2. “대안교육”이란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말한다.

3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대구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
2.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방안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추진사업)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위한 교육·상담·교원 연수 및 숙려제 운영
2.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
3.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
4. 학업중단 학생의 재취학 및 재입학을 위한 상담·학습지원·교육·단기 보호 등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재정지원 등)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,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「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사무의 위탁)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타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, 구·군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재정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.

(붙임)

관 계 법 령

□ 초·중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제4조(학교의 설립 등)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·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사립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14조(취학 의무의 면제 등) ① 질병·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.

제18조(학생의 징계)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. 다만,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.

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□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안교육”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.
2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시설 등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5조(대안교육기관의 설립·운영의 등록 등)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(체육장을 포함한다)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위치
4. 교육목표
5. 학칙
6. 경비와 유지방법
7. 교육과정 운영계획서
8. 교직원 배치계획서
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.

1. 외국 대학 입학에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
2.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
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
4.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

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,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